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82
----------	-------

발의연월일 : 2025. 9. 30.

발 의 자 : 윤준병 · 임미애 · 한창민
송옥주 · 이원택 · 주철현
임호선 · 이병진 · 문대림
전종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에 대하여 그 체결과정에서 국회의 이해와 참여 기회를 확보하여 통상조약 체결절차의 투명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런데 통상조약 체결로 인해 농축수산업 등의 시장이 기존에 비해 개방되는 경우 가격 경쟁력 부족, 신규 품종 수입에 따른 대체효과 등으로 인해 국내 농축수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통상조약 비준동의안을 심의·의결하는 외교통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과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 등을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관 사항에 한정한다) 및”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상협상”을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협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축수산업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2.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3. 통상조약 체결에 따라 피해가 전망되는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외 공개가 어려울 경우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u> (소관 사항에 한정한다) 및-----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통상협상</u>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이하 “통상조약체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 ----- <u>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협상</u> ----- ----- ----- ----- -----.

이행에 따라 요구되는 통상협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략)

<신 설>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2.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3. 통상조약 체결에 따라 피해가 전망되는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외 공개가 어려울 경우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회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국회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없이 국회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 -----. -----. 1. ~ 3. (현행과 같음) ③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및 관련 상임위원회는----- -----. -----.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① -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및 관련 상임위원회에-----. ② (현행과 같음)
--	--